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580

발의연월일: 2022. 7. 21.

발 의 자: 한준호·강선우·기동민

김병기 · 민형배 · 소병철

신영대 · 안민석 · 윤호중

이상헌 · 이용빈 · 정일영

조승래 · 최인호 · 최종유

황운하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의식불명이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급박한 생명·신체·재산상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발생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의 경우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 가 가능하나 성인인 부모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·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'정보주체의 소재불명'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신상정보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

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2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제3호 중 "주소불명"을 "주소불명, 소재불명"으로, "인정되는 경우"를 "인정되는 경우.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소재불명의 경우 정보주체의 성명·나이·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에 한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혂 행 개 아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·제공 제한) ① (생 략) ·제공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 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 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 다. 다만, 이용자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|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 다)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(「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 하 같다)의 경우 제1호ㆍ제2호 의 경우로 한정하고,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 의 경우로 한정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 중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<u>주소불명</u>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<u>인정되는</u>경우 <단서 신설>

4. ~ 9. (생 략)

③ ~ ⑤ (생 략)

1.	• 2. (현행과 같음)	
3.		-
		-
	<u>주소불명,</u> 소	<u>`</u>
	<u>재불명</u>	-
		-
		-
		-
		-
	인정되는 경우. 다만, 소재불	<u>-</u>
	명의 경우 정보주체의 성명・	_
	나이・사진 등 특정인임을 스] 1
	별하기 위한 정보에 한정한	<u> </u> -
	<u>다.</u>	
4.	~ 9. (현행과 같음)	
3	~ ⑤ (현행과 같음)	